

## 오산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

제정 2012년 5월 15일 조례 제1214호  
일부개정 2025년 7월 1일 조례 제2288호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라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,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노인복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을 따른다. <개정 2025. 7. 1>

1. 삭제 <2025. 7. 1>
2. 삭제 <2025. 7. 1>
3. 삭제 <2025. 7. 1>

**제3조(시장의 책무)** ① 오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,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학대노인의 발견·보호·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·홍보,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·조사,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시민의 책무)**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,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5조** 삭제 <2025. 7. 1>

**제6조** 삭제 <2025. 7. 1>

**제7조** 삭제 <2025. 7. 1>

**제8조** 삭제 <2025. 7. 1>

**제9조** 삭제 <2025. 7. 1>

**제10조** 삭제 <2025. 7. 1>

**제11조** 삭제 <2025. 7. 1>

**제12조** 삭제 <2025. 7. 1>

**제13조(시행계획 수립 등)**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
2.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
3.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
4.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
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**제14조(협력체계 구축)**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, 노인복지시설, 의료기관, 사법경찰, 법률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**제15조(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)** 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학대피해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,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입소의뢰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**제16조(비용의 보조)**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**제17조(정보제공)**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18조(교육)** ① 시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법 제39조의6제2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〈개정 2025. 7. 1〉

② 제1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등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.

**제19조(홍보)** ① 시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분기별로 시정소식지, 통장회의 자료, 지역신문, 유선방송, 오산시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25. 7. 1〉

② 제1항의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**제20조(조사)** 시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노인학대 유형별 증감추이와 처리 실적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.

**제21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 오산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호 라목을 “그 밖의 노인의 권익 및 복지 문화 증진을 위한 사업”으로 한다.

**부칙** 〈2025. 7. 1 조례 제2288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